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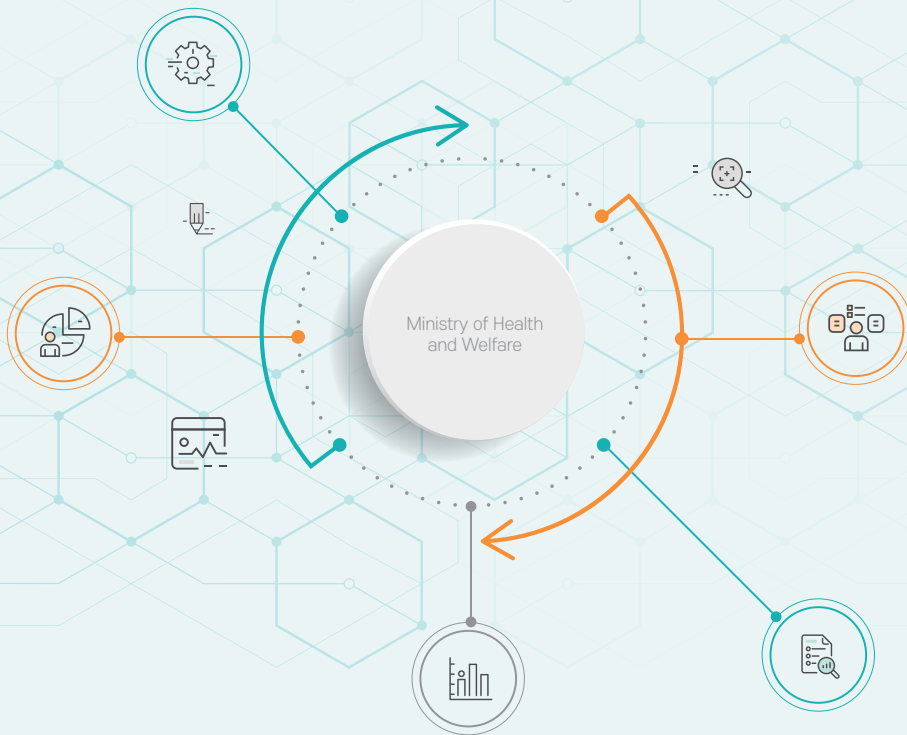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편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
편집위원 심의선, 방그리, 이지연
인쇄 경성문화사(044-864-1627)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CONTENTS 목차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4
1. 신고접수	14
1) 신고접수	14
2) 시도별 신고접수	15
2. 신고자 유형	16
1) 신고자 유형	16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18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20
1. 사례판단	20
1) 사례판단 결과	20
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21
2. 피해아동 발견율	22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2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3
1) 피해아동	23
가. 피해아동 성별	23
나. 피해아동 연령	23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25
2) 학대행위자	26
가. 학대행위자 성별	26
나. 학대행위자 연령	27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8

CONTENTS 목차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30
1) 아동학대 발생장소	3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31
1)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31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32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32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33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3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34
1) 피해아동 상황	34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34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36
2) 학대행위자 상황	38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38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43
5. 서비스 제공 현황	48
6. 재학대 사례	50
1) 재학대 사례 현황	50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50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50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51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52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2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53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4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55

CONTENTS 목차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5
6) 재학대 사례 상황	56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56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56

제4절 연도별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57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58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61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62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3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4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66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70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70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71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71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71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71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72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73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73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	74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75

CONTENTS

목차

3.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76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76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76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76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77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77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78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78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79
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80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80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80
5. 사망사례 발생 현황	81
1)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81
2)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81
6.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82
7.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83
.....	
부 록	86
1. 업무흐름도	86
2. 용어 설명	87
통계 정정사항	92
1.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및 주요통계	92

CONTENTS

표 목차

제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표 1-1-1> 신고접수 건수	14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15
<표 1-1-3> 신고자 유형	16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18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19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표 1-2-1> 사례판단 결과	20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1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22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표 1-3-1> 피해아동 성별	23
<표 1-3-2> 피해아동 연령	24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5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26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27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8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30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31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32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33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3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34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35
<표 1-3-14>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36
<표 1-3-1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36

CONTENTS 표 목차

<표 1-3-1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37
<표 1-3-17>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지	37
<표 1-3-18> 학대행위자 상황	38
<표 1-3-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38
<표 1-3-2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38
<표 1-3-2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39
<표 1-3-22> 임시조치 결정 현황	40
<표 1-3-2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42
<표 1-3-2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43
<표 1-3-25>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44
<표 1-3-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47
<표 1-3-27>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48
<표 1-3-28>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49
<표 1-3-29>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49
<표 1-3-30>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50
<표 1-3-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50
<표 1-3-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51
<표 1-3-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2
<표 1-3-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53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4
<표 1-3-3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5
<표 1-3-3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56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56
제4절 연도별 현황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57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58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61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62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3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4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66

CONTENTS 표 목차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70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71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71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72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73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74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75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76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76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77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77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78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79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80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80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81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81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82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83

CONTENTS

그림 목차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14
[그림 1-1-2] 신고자 유형	17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20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1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23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24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5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26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27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9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32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37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39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41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42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50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51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2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53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4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55

CONTENTS

그림 목차

제4절 연도별 현황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57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61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62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3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65
[그림 1-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67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014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020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023
제4절 연도별 현황	057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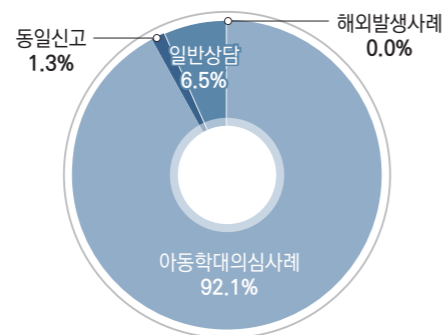
1) 신고접수

2020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1,858건(4.4%),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7,071건(87.7%)로 총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1%로 나타났다. 이외 동일신고는 557건(1.3%), 일반상담은 2,761건(6.5%)이었다.

〈표 1-1-1〉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858	37,071	38,929	557	2,761	4	42,251
(4.4)	(87.7)	(92.1)	(1.3)	(6.5)	(0.0)	(100.0)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20. 10. 1.부터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됨.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 2019년 기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41,389건이었음.

2) 시도별 신고접수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경기 9,192건(23.6%), 서울 4,167건(10.7%) 순으로 높았으며, 낮은 순으로는 세종 371건(1.0%), 제주 859건(2.2%)으로 나타났다.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159	(8.6)	4,008	(10.8)	4,167	(10.7)
부산	34	(1.8)	2,078	(5.6)	2,112	(5.4)
대구	66	(3.6)	1,653	(4.5)	1,719	(4.4)
인천	311	(16.7)	2,788	(7.5)	3,099	(8.0)
광주	11	(0.6)	847	(2.3)	858	(2.2)
대전	94	(5.1)	1,551	(4.2)	1,645	(4.2)
울산	22	(1.2)	1,380	(3.7)	1,402	(3.6)
경기	564	(30.4)	8,628	(23.3)	9,192	(23.6)
강원	51	(2.7)	1,353	(3.6)	1,404	(3.6)
충북	201	(10.8)	1,087	(2.9)	1,288	(3.3)
충남	64	(3.4)	2,310	(6.2)	2,374	(6.1)
전북	56	(3.0)	2,397	(6.5)	2,453	(6.3)
전남	82	(4.4)	2,286	(6.2)	2,368	(6.1)
경북	96	(5.2)	1,779	(4.8)	1,875	(4.8)
경남	40	(2.2)	1,703	(4.6)	1,743	(4.5)
제주	3	(0.2)	856	(2.3)	859	(2.2)
세종	4	(0.2)	367	(1.0)	371	(1.0)
총계	1,858	(100.0)	37,071	(100.0)	38,929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의심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총 38,929건 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973건(28.2%)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3,805건(9.8%)이 가장 높았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7,956건(71.8%)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0,254건(26.3%), 부모 6,284건(16.1%), 아동본인 5,533건(14.2%), 이웃·친구 1,94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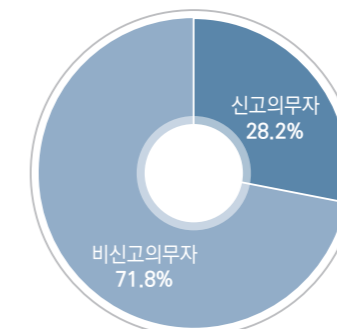
〈표 1-1-3〉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3,805	(9.8)	아동본인	5,533	(14.2)
의료인·의료기사	363	(0.9)	부모	6,284	(16.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711	(1.8)	형제, 자매	443	(1.1)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46	(0.1)	친인척	653	(1.7)
보육교직원	182	(0.5)	이웃·친구	1,945	(5.0)
유치원교직원, 강사	140	(0.4)	경찰	216	(0.6)
학원강사	42	(0.1)	종교인	28	(0.1)
소방구급대원	25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67	(0.9)
성매매피해시설상담종사자	3	(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0,254	(26.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30	(0.1)	의료사회복지사	39	(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10	(0.5)	낮선사람	611	(1.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47	(0.9)	익명	401	(1.0)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51	(0.1)	법원	55	(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32	(1.6)	기타	1,127	(2.9)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84	(2.5)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2,394	(6.1)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91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61	(0.2)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65	(0.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83	(0.2)			
응급구조사	1	(0.0)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280	(0.7)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87	(0.2)			
아이돌보미	21	(0.1)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308	(0.8)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10	(0.0)			
입양기관종사자	1	(0.0)			
소계	10,973	(28.2)	소계	27,956	(71.8)
계			38,92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 2020. 1. 1.-2020. 9. 30. 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포함.



[그림 1-1-2] 신고자 유형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건)

신고자 유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초·중·고교 직원		304	356	163	188	84	133	146	752	201	134	271	258	231	242	258	54	30	3,805
의료인·의료기사		71	12	13	20	8	14	7	101	13	16	14	15	21	15	7	1		36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0	34	26	16	8	21	14	231	22	38	30	43	36	85	21	4	2	71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	6	0	0	0	5	1	6	2	17	0	0	2	4	0	2	0	46
보육교직원		25	11	7	13	1	3	10	29	10	12	9	17	5	21	5	1	3	182
유치원교직원·강사		23	8	3	5	2	14	6	36	8	1	7	4	9	2	1	3	8	14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5	0	0	2	2	1	7	2	0	1	9	1	4	3	3	0	42
소방구급대원		1	1	4	1	0	0	3	11	0	0	1	0	1	0	2	0	0	25
성매매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1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3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6	1	2	5	0	3	1	1	0	5	0	1	3	0	2	0	0	3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9	0	6	7	4	5	7	36	10	20	29	15	6	34	20	2	0	2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1	30	27	10	2	10	3	77	20	7	31	30	21	27	7	3	1	347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	2	6	9	2	1	1	2	0	4	1	3	3	3	10	0	0	5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3	18	67	6	12	11	54	147	8	9	87	19	27	18	55	0	31	63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9	111	59	38	18	9	139	128	43	53	114	23	57	21	66	0	6	984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34	34	177	342	23	194	59	528	95	69	79	259	137	133	48	80	3	2,394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	2	12	4	1	1	1	14	4	16	16	2	0	5	9	1	0	9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	1	1	0	4	0	0	10	2	5	7	7	8	4	9	0	0	6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9	1	0	2	3	3	4	17	10	4	2	3	1	5	1	0	0	65
성폭력피해보호 시설종사자·성폭력 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3	0	6	1	1	1	5	13	7	7	4	7	2	23	3	0	0	83
응급구조사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3	34	3	20	7	6	7	67	19	14	8	24	32	7	6	1	2	280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22	11	0	2	5	1	4	9	1	1	4	7	4	7	6	2	1	87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아이돌보미		2	2	1	0	0	2	6	3	0	0	0	0	2	0	1	2	0	21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14	0	3	37	0	0	7	56	24	28	28	35	29	40	5	0	2	308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3	0	0	1	0	0	1	0	4	0	0	0	1	10
입양기관 종사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945	680	587	726	190	440	486	2,282	501	460	744	781	642	700	553	165	91	10,97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 2020.1.1.-2020.9.30. 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로 포함.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건)

비신고자 유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아동 본인		807	247	299	474	118	229	120	1,513	130	149	355	158	288	217	223	141	65	5,533
부모		859	306	238	434	139	254	216	1,756	184	191	337	261	354	285	303	131	36	6,284
형제자매		49	12	20	29	14	18	9	127	17	11	25	12	29	23	27	15	6	443
친인척		69	47	25	34	16	31	18	154	24	34	39	45	37	22	36	16	6	653
이웃친구		355	64	70	214	25	92	47	506	35	75	86	68	113	72	83	30	10	1,945
경찰		24	5	6	6	4	3	0	52	7	8	30	23	14	27	6	0	1	216
종교인		3	1	0	2	0	0	0	6	0	0	6	0	4	0	6	0	0	28
사회복지 관련종사자		20	16	9	38	6	11	7	77	7	23	43	38	17	24	16	15	0	367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717	583	388	986	169	508	443	2,217	420	254	598	990	790	386	405	262	138	10,254
의료사회 복지사		2	0	0	9	1	3	2	12	4	0	2	2	1	1	0	0	0	39
낮선사람		119	19	28	53	8	16	17	141	11	38	22	19	34	30	18	35	3	611
익명		47	78	12	12	88	2	8	43	17	8	10	14	11	11	34	3	3	401
법원		5	6	3	4	4	4	3	9	0	3	1	5	2	0	4	0	2	55
기타		146	48	34	78	76	34	26	297	47	34	76	37	32	77	29	46	10	1,127
소계		3,222	1,432	1,132	2,373	668	1,205	916	6,910	903	828	1,630	1,672	1,726	1,175	1,190	694	280	27,956

비신고의무자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1. 사례판단

1)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38,929건 중 아동학대사례는 30,905건(79.4%), 조기지원사례 827건(2.1%), 일반사례 7,057건(18.1%), 조사진행중사례 140건(0.4%)으로 나타났다.

〈표 1-2-1〉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30,905	827	7,057	140	38,929
(79.4)	(2.1)	(18.1)	(0.4)	(100.0)

※ 조기지원사례는 2020. 10. 1.부터 일반사례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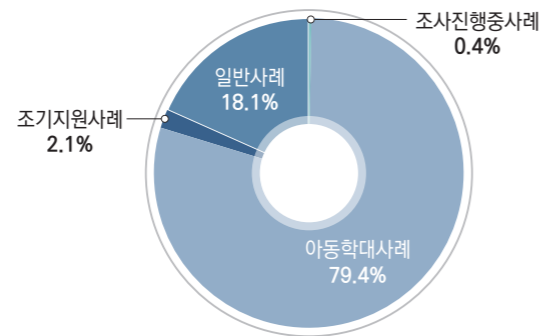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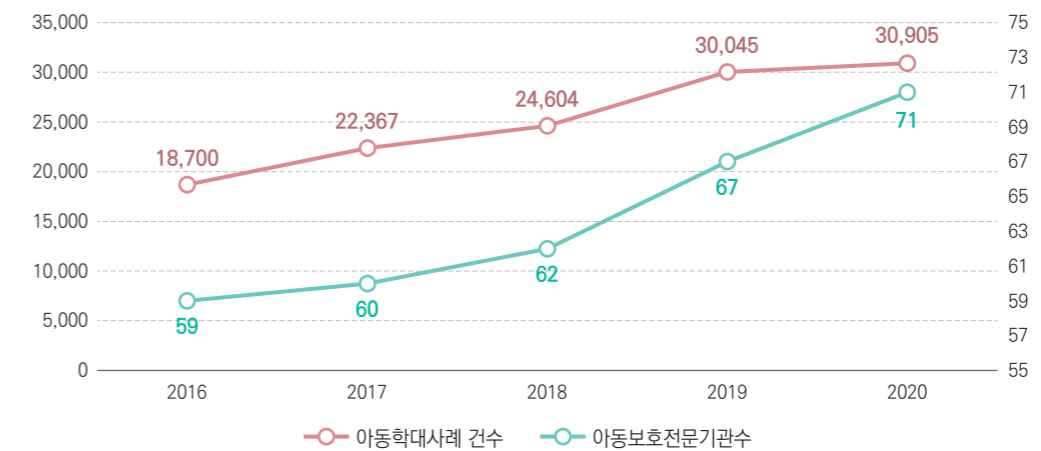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2.9%이었다. 기관수의 경우 2016년 59개소에서 2020년 71개소로 12개소 증가했다.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동학대사례	건수	18,700	22,367	24,604
	증가율	59.6%	19.6%	10.0%	22.1%	2.9%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9	60	62	67	71
	증가 기관수	4	1	2	5	4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조사진행중사례'란 2020년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뜻함.

2.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만0세~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4.0%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7.9%, 전라남도 7.5%, 울산광역시 6.5%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서로는 서울 2.3%, 경상남도 2.7%로 나타났다.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지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199,002	2,780	2.3
부산광역시	436,150	1,558	3.6
대구광역시	355,528	1,271	3.6
인천광역시	445,512	2,427	5.4
광주광역시	244,226	698	2.9
대전광역시	231,275	1,363	5.9
울산광역시	188,742	1,234	6.5
경기도	2,174,093	7,669	3.5
강원도	208,639	1,153	5.5
충청북도	242,263	1,025	4.2
충청남도	340,092	1,940	5.7
전라북도	262,910	2,086	7.9
전라남도	255,937	1,909	7.5
경상북도	366,978	1,450	4.0
경상남도	529,971	1,443	2.7
제주특별자치도	116,760	562	4.8
세종특별자치시	80,815	337	4.2
계	7,678,893	30,905	4.0

* 통계청(2020).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www.kosis.kr>.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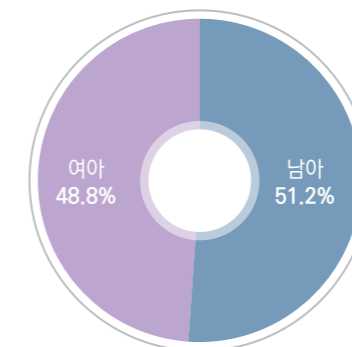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 중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으로 피해아동은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명, %)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비율)	15,815	(51.2)	15,090	(48.8)	30,905	(100.0)
명수(비율)	11,610	(51.8)	10,821	(48.2)	22,431	(100.0)

※ 아동학대사례 30,905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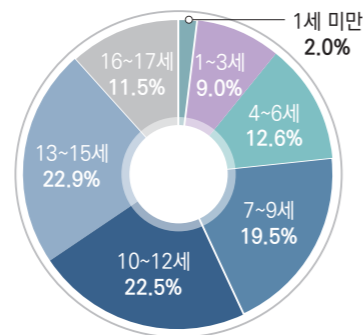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7,077건(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6,957건(22.5%), 만 7~9세가 6,016건(19.5%)으로 나타났다.

〈표 1-3-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614	(2.0)	398	(1.8)
1세	749	(2.4)	503	(2.2)
2세	907	(2.9)	608	(2.7)
3세	1,117	(3.6)	754	(3.4)
소계	2,773	(9.0)	1,865	(8.3)
4세	1,168	(3.8)	808	(3.6)
5세	1,305	(4.2)	867	(3.9)
6세	1,427	(4.6)	992	(4.4)
소계	3,900	(12.6)	2,667	(11.9)
7세	1,844	(6.0)	1,261	(5.6)
8세	2,026	(6.6)	1,405	(6.3)
9세	2,146	(6.9)	1,518	(6.8)
소계	6,016	(19.5)	4,184	(18.7)
10세	2,180	(7.1)	1,605	(7.2)
11세	2,281	(7.4)	1,684	(7.5)
12세	2,496	(8.1)	1,847	(8.2)
소계	6,957	(22.5)	5,136	(22.9)
13세	2,443	(7.9)	1,835	(8.2)
14세	2,493	(8.1)	1,876	(8.4)
15세	2,141	(6.9)	1,657	(7.4)
소계	7,077	(22.9)	5,368	(23.9)
16세	2,003	(6.5)	1,551	(6.9)
17세	1,565	(5.1)	1,262	(5.6)
소계	3,568	(11.5)	2,813	(12.5)
계	30,905	(100.0)	22,431	(100.0)

※ 아동학대사례 30,905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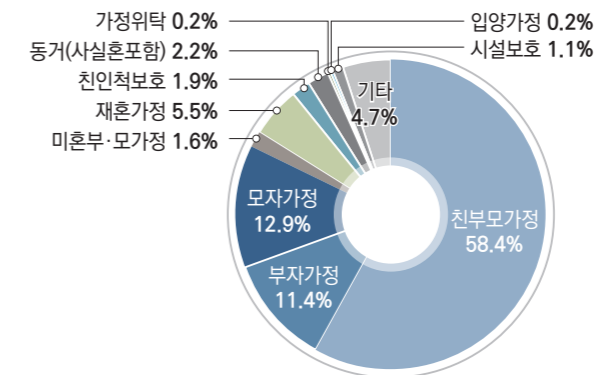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정 18,059건(58.4%), 모자가정 3,977건(12.9%), 부자가정 3,521건(11.4%), 재혼가정 1,686건(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기타	계
18,059	3,521	3,977	487	1,686	582	668	69	66	340	1,450	30,905
(58.4)	(11.4)	(12.9)	(1.6)	(5.5)	(1.9)	(2.2)	(0.2)	(0.2)	(1.1)	(4.7)	(100.0)

- 친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 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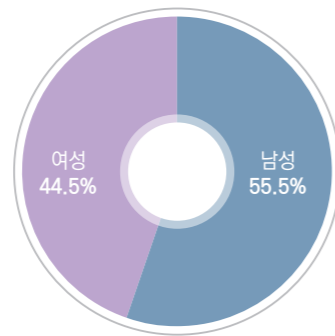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성별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 중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17,145건(55.5%), 여성 13,760건(44.5%)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건수(비율)	17,145	(55.5)	13,760	(44.5)	30,905	(100.0)
명수(비율)	10,601	(55.5)	8,512	(44.5)	19,113	(100.0)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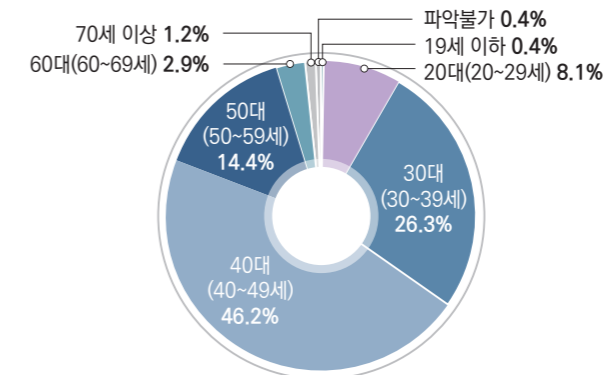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4,286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8,133건(26.3%), 50대 4,446건(14.4%), 20대 2,517건(8.1%), 60대 911건(2.9%), 70세 이상 369건(1.2%), 19세 이하 133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133	(0.4)	116	(0.6)
20대(20~29세)	2,517	(8.1)	1,514	(7.9)
30대(30~39세)	8,133	(26.3)	4,633	(24.2)
40대(40~49세)	14,286	(46.2)	8,946	(46.8)
50대(50~59세)	4,446	(14.4)	2,966	(15.5)
60대(60~69세)	911	(2.9)	599	(3.1)
70세 이상	369	(1.2)	260	(1.4)
파악불가	110	(0.4)	79	(0.4)
계	30,905	(100.0)	19,113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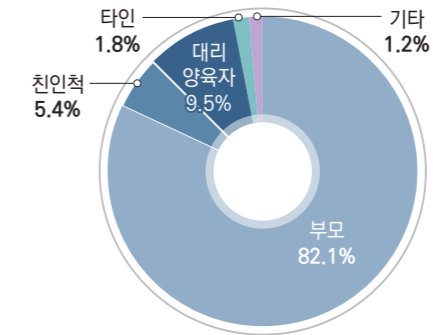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25,380건(82.1%),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3,471건(43.6%), 친모는 10,945건(35.4%), 계부 578건(1.9%), 계모 312건(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882건(2.9%)으로 가장 높았다.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3,471	(43.6)
	친모	10,945	(35.4)
	계부	578	(1.9)
	계모	312	(1.0)
	양부	40	(0.1)
	양모	34	(0.1)
	소계	25,380	(82.1)
	친인척	1,661	(5.4)
친인척	친조부	231	(0.7)
	친조모	374	(1.2)
	외조부	131	(0.4)
	외조모	230	(0.7)
	친인척	429	(1.4)
	형제, 자매	266	(0.9)
	소계	1,661	(5.4)
	대리양육자*	2,930	(9.5)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444	(1.4)
	유치원교직원	118	(0.4)
	초·중·고교 직원	882	(2.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08	(0.7)
	보육교직원	634	(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56	(1.8)
	기타시설 종사자	12	(0.0)
	소계	2,930	(9.5)
타인	565	(1.8)	
타인	이웃	211	(0.7)
	낯선사람	354	(1.1)
	소계	565	(1.8)
기타	369	(1.2)	
계	30,905	(100.0)	

관계		건수(비율)	
대리양육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14	(0.0)
	위탁부	4	(0.0)
	위탁모	16	(0.1)
	아이돌보미	42	(0.1)
	소계	2,930	(9.5)
타인	이웃	211	(0.7)
	낯선사람	354	(1.1)
	소계	565	(1.8)
기타	369	(1.2)	
계	30,905	(100.0)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6,996건(8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26,249건(84.9%)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658건(2.1%), 129건(0.4%), 893건(2.9%)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605건(2.0%), 기타복지시설이 34건(0.1%)으로 전체 사례 중 2.1%였다.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6,249	(84.9)
	학대행위자 가정 내	747	(2.4)
소계		26,996	(87.4)
집근처 또는 길가		586	(1.9)
친척집		193	(0.6)
이웃집		42	(0.1)
어린이집		658	(2.1)
유치원		129	(0.4)
학교		893	(2.9)
학원		174	(0.6)
병원		55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605	(2.0)
	기타복지시설	34	(0.1)
소계		639	(2.1)
숙박업소		126	(0.4)
종교시설		37	(0.1)
기타		377	(1.2)
계		30,905	(100.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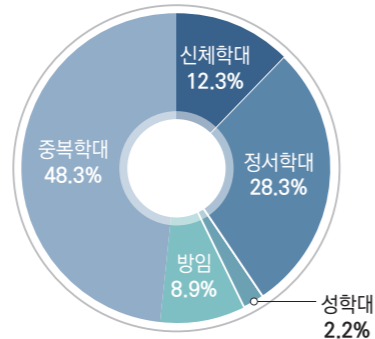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12,130건(39.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1,086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996건(3.2%),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19건(0.1%)이었다.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3,807	(12.3)
정서학대		8,732	(28.3)
성학대		695	(2.2)
방임		2,737	(8.9)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2,130	(39.2)
	신체학대·성학대	28	(0.1)
	신체학대·방임	316	(1.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66	(0.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996	(3.2)
	신체학대·성학대·방임	2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9	(0.1)
	정서학대·성학대	175	(0.6)
	정서학대·방임	1,086	(3.5)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	(0.0)
	성학대·방임	7	(0.0)
	소계	14,934	(48.3)
	계	30,905	(100.0)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피해아동 성별을 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사례에서는 남아가 각각 약 55.1%, 50.6%, 51.4%로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남	9,615	(55.1)	11,802	(50.6)	185	(16.8)	2,659	(51.4)	24,261	(51.6)
여	7,849	(44.9)	11,511	(49.4)	916	(83.2)	2,513	(48.6)	22,789	(48.4)
계	17,464	(100.0)	23,313	(100.0)	1,101	(100.0)	5,172	(100.0)	47,050	(100.0)

※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1세 미만	138	(0.8)	285	(1.2)	0	(0.0)	324	(6.3)	747	(1.6)
1~3세	1,082	(6.2)	1,925	(8.3)	11	(1.0)	806	(15.6)	3,824	(8.1)
4~6세	1,986	(11.4)	2,834	(12.2)	64	(5.8)	877	(17.0)	5,761	(12.2)
7~9세	3,456	(19.8)	4,500	(19.3)	179	(16.3)	1,149	(22.2)	9,284	(19.7)
10~12세	4,066	(23.3)	5,394	(23.1)	281	(25.5)	1,044	(20.2)	10,785	(22.9)
13~15세	4,507	(25.8)	5,500	(23.6)	356	(32.3)	709	(13.7)	11,072	(23.5)
16~17세	2,229	(12.8)	2,875	(12.3)	210	(19.1)	263	(5.1)	5,577	(11.9)
계	17,464	(100.0)	23,313	(100.0)	1,101	(100.0)	5,172	(100.0)	47,050	(100.0)

※ 중복포함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방임 사례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6.9%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기타인 경우가 39.5%, 부모인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부 모	14,647	(83.9)	19,745	(84.7)	348	(31.6)	4,493	(86.9)	39,233	(83.4)
친인척	1,009	(5.8)	1,183	(5.1)	75	(6.8)	204	(3.9)	2,471	(5.3)
대리양육자	1,504	(8.6)	1,941	(8.3)	243	(22.1)	443	(8.6)	4,131	(8.8)
기타	304	(1.7)	444	(1.9)	435	(39.5)	32	(0.6)	1,215	(2.6)
계	17,464	(100.0)	23,313	(100.0)	1,101	(100.0)	5,172	(100.0)	47,050	(100.0)

※ 중복포함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및 최종조치결과를 포함한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상황,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의 상황은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가정복귀, 사망,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020년 아동학대사례 30,90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9,870건(31.9%)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21,035건(68.1%)이었다.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

사례종결		진행중		계	
9,870	(31.9)	21,035	(68.1)	30,905	(100.0)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하며, 이 표는 피해아동의 전체 상황을 수치화하였다. 최초조치와 최종조치 사이에는 다양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된다.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5,916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조치 된 경우 3,926건(12.7%), 가정복귀 된 경우는 798건(2.6%)으로 나타났다.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피해아동상황	상세조치		2020	
	최초	최종	건수	(%)
원가정보호	원가정보호 유지		25,916	(83.9)
	원가정보호	가정복귀	82	(0.3)
가정복귀	분리조치	가정복귀	680	(2.2)
	기타	가정복귀	36	(0.1)
	소계		798	(2.6)
	소계		798	(2.6)
분리조치	분리조치 유지		2,381	(7.7)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445	(1.4)
	분리조치	분리조치	1,085	(3.5)
	기타	분리조치	15	(0.0)
	소계		3,926	(12.7)
	소계		3,926	(12.7)
기타		175	(0.6)	
사망*		90	(0.3)	
계		30,905	(100.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아동의 사망 건수는 실제 사망아동 실인원 수와 차이가 있음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2020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2020년 전국 총 76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1,026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20년 이전에 입소하여 2020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374명(36.5%)이었고, 2020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652명(63.5%)이었다.

〈표 1-3-14〉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명, %)

아동 수	2020년 이전 입소아동		2020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명	(%)	명	(%)	명	(%)
	374	(36.5)	652	(63.5)	1,026	(100.0)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1,026명 중 퇴소한 아동은 526명(51.3%)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500명(48.7%)이었다.

〈표 1-3-1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명, %)

아동 수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명	(%)	명	(%)	명	(%)
	526	(51.3)	500	(48.7)	1,0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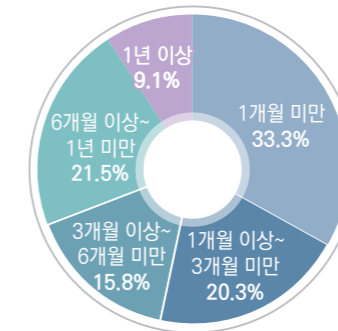
② 2020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526명 기준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175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113명(21.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07명(20.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83명(15.8%), 1년 이상 48명(9.1%)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1-3-1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명, %)

거주 기간	명수	(비율)
1개월 미만	175	(33.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07	(2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83	(15.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13	(21.5)
1년 이상	48	(9.1)
계	526	(100.0)

※ 퇴소 아동 526명 기준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③ 2020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는 타 시설로 입소한 아동이 275명(52.3%)으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한 아동이 204명(38.8%), 가정위탁 12명(2.3%), 친족(친인척)보호된 아동은 8명(1.5%)으로 나타났다.

〈표 1-3-17〉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	(비율)
원가정 복귀	204	(38.8)
친족(친인척)보호	8	(1.5)
가정위탁	12	(2.3)
타 시설 입소	275	(52.3)
기타	27	(5.1)
계	526	(100.0)

※ 퇴소 아동 526명 기준

2] 학대행위자 상황

2020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소·고발뿐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11,209건이었다.

〈표 1-3-18〉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아동학대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0,905	11,20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경우 정서학대 8,182건(45.6%), 신체학대 6,777건(37.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고소·고발사건처리	6,777 (37.8)	8,182 (45.6)	928 (5.2)	2,047 (11.4)	17,934 (100.0)

※ 중복포함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20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중 3,635건(11.8%)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표 1-3-2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30,905	3,635	11.8%

①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11건(5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77건(5.1%),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620건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수정보완 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0. 10. 1.부터 배치되어 조치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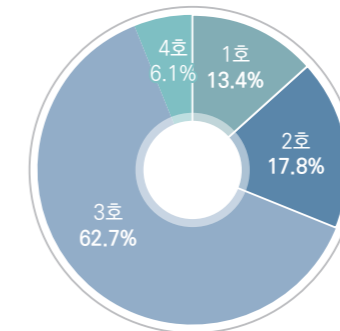
(41.1%)으로 건수가 총 1,508건이었다. 응급조치 내용 중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1,285건(62.7%)이었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365건(17.8%), 1호(학대행위 제지) 275건(13.4%),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126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건, %)

분류	건수		조치 내용					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계					
상담원	811	(53.8)	54	(5.5)	97	(10.0)	766	(78.6)	57	(5.9)	974	(100.0)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7	(5.1)	4	(4.3)	10	(10.8)	75	(80.6)	4	(4.3)	93	(100.0)
경찰	620	(41.1)	217	(22.1)	258	(26.2)	444	(45.1)	65	(6.6)	984	(100.0)
계	1,508	(100.0)	275	(13.4)	365	(17.8)	1,285	(62.7)	126	(6.1)	2,051	(100.0)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②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 최종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아동·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변호사·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을 통해 임시조치가 인용된 사례는 총 2,451건(90.9%)에 해당하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246건(9.1%)이었다. 임시조치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 1,786건(39.0%)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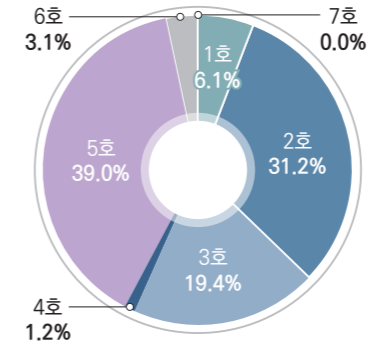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가 1,426건(31.2%)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 금지가 964건(37.5%), 학교 및 학원에서의 접근금지가 846건(32.9%), 주거로의 접근금지가 661건(25.7%)으로 나타났다.

〈표 1-3-22〉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인용 세부 내용													결정 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검사	40	0	40	5	16	18	16	0	2	52	28	19	1	31	2	0	86	
	(100.0)	(0.0)	(100.0)	(5.8)	(30.8)	(34.6)	(30.8)	(0.0)	(3.8)	(100.0)	(32.6)	(22.1)	(1.2)	(36.0)	(2.3)	(0.0)	(100.0)	
사법 경찰관	1,298	69	1,367	202	464	616	742	44	37	1,903	1,050	648	42	791	52	1	2,786	
	(95.0)	(5.0)	(100.0)	(7.3)	(24.4)	(32.4)	(39.0)	(2.3)	(1.9)	(100.0)	(37.7)	(23.3)	(1.5)	(28.4)	(1.9)	(0.0)	(100.0)	
시·군·구청장	60	3	63	1	23	23	13	0	0	59	32	8	0	51	1	0	93	
	(95.2)	(4.8)	(100.0)	(1.1)	(39.0)	(39.0)	(22.0)	(0.0)	(0.0)	(100.0)	(34.4)	(8.6)	(0.0)	(54.8)	(1.1)	(0.0)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929	174	1,103	44	126	146	136	7	4	419	238	163	7	830	82	0	1,364	
	(84.2)	(15.8)	(100.0)	(3.2)	(30.1)	(34.8)	(32.5)	(1.7)	(1.0)	(100.0)	(17.4)	(12.0)	(0.5)	(60.9)	(6.0)	(0.0)	(100.0)	
변호사	2	0	2	1	1	1	1	0	0	3	1	1	0	1	0	0	4	
	(100.0)	(0.0)	(100.0)	(25.0)	(33.3)	(33.3)	(33.3)	(0.0)	(0.0)	(100.0)	(25.0)	(25.0)	(0.0)	(25.0)	(0.0)	(0.0)	(100.0)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4	0	4	0	0	1	2	1	0	4	2	0	0	3	1	0	6	
	(100.0)	(0.0)	(100.0)	(0.0)	(0.0)	(25.0)	(50.0)	(25.0)	(0.0)	(100.0)	(33.3)	(0.0)	(0.0)	(50.0)	(16.7)	(0.0)	(100.0)	
피해 아동	4	0	4	2	2	1	2	0	0	5	4	2	0	3	0	0	11	
	(100.0)	(0.0)	(100.0)	(18.2)	(40.0)	(20.0)	(40.0)	(0.0)	(0.0)	(100.0)	(36.4)	(18.2)	(0.0)	(27.3)	(0.0)	(0.0)	(100.0)	
판사 직권	114	0	114	22	29	40	52	2	6	129	71	47	3	76	5	0	224	
	(100.0)	(0.0)	(100.0)	(9.8)	(22.5)	(31.0)	(40.3)	(1.6)	(4.7)	(100.0)	(31.7)	(21.0)	(1.3)	(33.9)	(2.2)	(0.0)	(100.0)	
계	2,451	246	2,697	277	661	846	964	54	49	2,574	1,426	888	53	1,786	143	1	4,574	
	(90.9)	(9.1)	(100.0)	(6.1)	(25.7)	(32.9)	(37.5)	(2.1)	(1.9)	(100.0)	(31.2)	(19.4)	(1.2)	(39.0)	(3.1)	(0.0)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용된 총 644건 중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396건으로 나타났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33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54건을 청구하여 47건이 인용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인용된 건수는 총 584건 중 기각된 74건을 제외하고 510건이었다. 변호사는 44건을 청구하여 43건이 인용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32건을 청구하여 31건이 인용되었고,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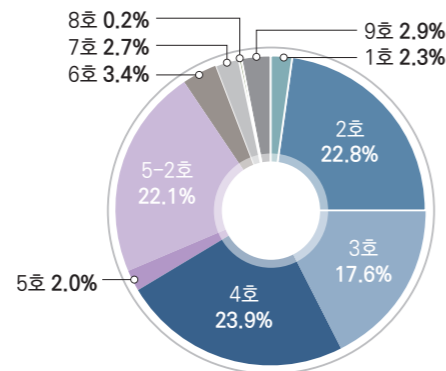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307건(23.9%)으로 가장 높았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293건(22.8%), 5-2호(피해아동 상담·치료위탁) 283건(22.1%),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226건(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인용 세부 내용										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11	0	11	8	3	0	4	4	7	4	11	0	4	0	0	34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47	7	54	32	22	2	26	18	21	2	26	2	1	0	1	99
아동보호전문기관장	510	74	584	309	275	22	206	156	242	14	225	39	28	3	35	970
변호사	43	1	44	33	11	2	29	25	31	4	11	2	2	0	0	106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31	1	32	14	18	3	27	22	6	2	9	1	0	0	1	71
파악불가	2	4	6	0	6	0	1	1	0	0	1	0	0	0	0	3
계	644	87	731	396	335	29	293	226	307	26	283	44	35	3	37	1,283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2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파악불가의 경우 청구인, 청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임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①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02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30,9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1,209건(36.2%)이었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0,455건(93.3%)이었고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754건(6.7%)이었다.

〈표 1-3-2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단위: 건, %)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수사외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수사미진행	처벌법조치완료	계	비율 (%)	계	비율 (%)				
795	(7.1)	525	(4.7)	1,912	(17.1)	7,135	(63.7)	88	(0.8)	10,455	(93.3)	754	(6.7)	11,209	(100.0)

※ 인지수사: 고소고발 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경우와 처벌법 응급조치 등에 따른 수사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포함.
 ※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분이 행해진 사례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 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4,329건(38.6%)이었다. 그 중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3,775건(33.7%), 내사종결 된 사례는 349건(3.1%)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2,628건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867건(7.7%), 불기소된 사례는 778건(6.9%),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803건(7.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86건(0.8%), 형사기소는 50건(0.4%)이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804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509건(4.5%),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45건(0.4%),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5건(0.0%)이었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600건(23.2%)이었다. 이중 보호처분 사례는 1,635건(14.6%), 형사처벌 사례가 276건(2.5%) 등으로 집계되었다.

* 고소고발조치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마감 이후 수정·보완 한 값을 반영함

〈표 1-3-25〉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단위 : 건, %)

구분		건수(비율)		
경찰 수사	수사중	3,775	(33.7)	
	내사종결	349	(3.1)	
	각하	2	(0.0)	
	파악불가	203	(1.8)	
	소계	4,329	(38.6)	
검찰 수사	수사중	867	(7.7)	
	불기소	778	(6.9)	
	아동보호사건송치	803	(7.2)	
	가정보호사건송치	86	(0.8)	
	형사기소	50	(0.4)	
	파악불가	44	(0.4)	
	소계	2,628	(23.4)	
재판 진행중	1심 진행	509	(4.5)	
	항소심 진행	45	(0.4)	
	상고심 진행	5	(0.0)	
	파악불가	245	(2.2)	
	소계	804	(7.2)	
판결	보호처분	감호위탁, 상담위탁	1	(0.0)
		보호관찰	128	(1.1)
		보호관찰, 상담위탁	153	(1.4)
		보호관찰, 치료위탁	20	(0.2)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14	(0.1)
		사회봉사·수강명령	217	(1.9)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55	(0.5)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5	(0.0)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1	(0.0)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23	(0.2)
		상담위탁	891	(7.9)
		접근행위제한	11	(0.1)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3	(0.0)

구분		건수(비율)		
판결	보호처분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1	(0.0)
		접근행위제한, 상담위탁,	11	(0.1)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12	(0.1)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감호위탁, 치료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2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상담위탁	1	(0.0)
		치료위탁	11	(0.1)
		치료위탁, 상담위탁	12	(0.1)
		친권행사제한	1	(0.0)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 상담위탁	1	(0.0)
소계	1,635	(14.6)		
판결	형사처벌	벌금	40	(0.4)
		벌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2	(0.1)
		벌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	(0.0)
		벌금, 집행유예	2	(0.0)
		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1	(0.0)
		벌금, 취업제한	1	(0.0)
		선고유예	1	(0.0)
		징역	41	(0.4)
		징역, 몰수, 집행유예, 사회봉사, 취업제한	1	(0.0)
		징역, 벌금,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1	(0.0)
		징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	(0.0)
		징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29	(0.3)
		징역, 집행유예	31	(0.3)

〈표 1-3-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

구분		건수(비율)	
판결	형사처벌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8 (0.1)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1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17 (0.2)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보호관찰	6 (0.1)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	8 (0.1)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8 (0.1)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2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취업제한	4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	3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23 (0.2)
		징역, 집행유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4 (0.0)
		징역, 집행유예, 취업제한	3 (0.0)
		징역, 취업제한	19 (0.2)
		파악불가	4 (0.0)
	형사처벌 소계	276 (2.5)	
	파악불가	공소기각	21 (0.2)
무죄		9 (0.1)	
불처분		617 (5.5)	
파악불가		42 (0.4)	
판결소계		2,600 (23.2)	
파악불가	수사진행했으나 결과값 없음	92 (0.8)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756 (0.8)	
	소계	848 (6.7)	
계		11,209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세부적인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 정서, 방임에서 보호처분이 각 192건(15.0%), 266건(11.7%), 179건(18.2%)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66건(10.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복학대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988건(16.3%)로 높게 나타났다.

고소·고발 결과 유형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불가		계	
				보호 처분	형사 처벌	무죄 +공소 기각 +불처분	파악 불가	소계	수사진행 했으나 결과값 없음	수사 미진행· 처벌법조치 완료		
신체학대	432	303	109	192	42	119	10	363	16	55	1,278	
	(33.8)	(23.7)	(8.5)	(15.0)	(3.3)	(9.3)	(0.8)	(28.4)	(1.3)	(4.3)	(100.0)	
정서학대	977	587	132	266	38	116	5	425	18	129	2,268	
	(43.1)	(25.9)	(5.8)	(11.7)	(1.7)	(5.1)	(0.2)	(18.7)	(0.8)	(5.7)	(100.0)	
성학대	252	188	61	10	66	11	2	89	4	10	604	
	(41.7)	(31.1)	(10.1)	(1.7)	(10.9)	(1.8)	(0.3)	(14.7)	(0.7)	(1.7)	(100.0)	
방임	319	217	81	179	16	34	4	233	12	119	981	
	(32.5)	(22.1)	(8.3)	(18.2)	(1.6)	(3.5)	(0.4)	(23.8)	(1.2)	(12.1)	(100.0)	
중복 학대	신체·정서	1,777	1,061	304	827	74	311	14	1,226	31	311	4,710
		(37.7)	(22.5)	(6.5)	(17.6)	(1.6)	(6.6)	(0.3)	(26.0)	(0.7)	(6.6)	(100.0)
	신체·성	12	11	3	0	0	0	1	1	0	1	28
		(42.9)	(39.3)	(10.7)	(0.0)	(0.0)	(0.0)	(3.6)	(3.6)	(0.0)	(3.6)	(100.0)
	신체·방임	39	24	11	32	3	7	0	42	0	14	130
		(30.0)	(18.5)	(8.5)	(24.6)	(2.3)	(5.4)	(0.0)	(32.3)	(0.0)	(10.8)	(100.0)
	신체·정서·성	50	29	16	12	9	2	0	23	2	10	130
		(38.5)	(22.3)	(12.3)	(9.2)	(6.9)	(1.5)	(0.0)	(17.7)	(1.5)	(7.7)	(100.0)
	신체·정서·방임	204	91	49	57	11	24	1	93	4	44	485
		(42.1)	(18.8)	(10.1)	(11.8)	(2.3)	(4.9)	(0.2)	(19.2)	(0.8)	(9.1)	(100.0)
	신체·성·방임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체·정서·성·방임	4	1	3	6	1	0	0	7	0	0	15
		(26.7)	(6.7)	(20.0)	(40.0)	(6.7)	(0.0)	(0.0)	(46.7)	(0.0)	(0.0)	(100.0)
정서·성	87	27	7	2	9	3	2	16	0	7	144	
	(60.4)	(18.8)	(4.9)	(1.4)	(6.3)	(2.1)	(1.4)	(11.1)	(0.0)	(4.9)	(100.0)	
정서·방임	175	85	27	52	7	20	3	82	5	55	429	
	(40.8)	(19.8)	(6.3)	(12.1)	(1.6)	(4.7)	(0.7)	(19.1)	(1.2)	(12.8)	(100.0)	
정서·성·방임	0	0	1	0	0	0	0	0	0	0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방임	0	4	0	0	0	0	0	0	0	1	5	
	(0.0)	(80.0)	(0.0)	(0.0)	(0.0)	(0.0)	(0.0)	(0.0)	(0.0)	(20.0)	(100.0)	
소계	2,349	1,333	421	988	114	367	21	1,490	42	443	6,078	
	(38.6)	(21.9)	(6.9)	(16.3)	(1.9)	(6.0)	(0.3)	(24.5)	(0.7)	(7.3)	(100.0)	
계	4,329	2,628	804	1,635	276	647	42	2,600	92	756	11,209	
	(38.6)	(23.4)	(7.2)	(14.6)	(2.5)	(5.8)	(0.4)	(23.2)	(0.8)	(6.7)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5. 서비스 제공 현황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표 1-3-27〉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2020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651,619
학대행위자	335,818
부모 또는 가족	165,586
계	1,153,023

※ 서비스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사건 처리, 행위자수탁프로그램 및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기타 등을 포함.

2020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651,619회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가 423,447회(65.0%)로 가장 높았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 63,797회(9.8%), 심리치료지원서비스 60,569회(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335,818회로 집계되었으며, 상담서비스 243,200회(72.4%), 심리치료지원서비스 26,148회(7.8%), 사건처리지원 20,492회(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는 총 165,586회였으며, 상담 서비스 123,239회(74.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3,740회(14.3%), 심리치료지원서비스 11,568회(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8〉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복포함)

(단위 :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상담	423,447	(65.0)	243,200	(72.4)	123,239	(74.4)
의료지원	5,710	(0.9)	1,533	(0.5)	420	(0.3)
심리치료지원	60,569	(9.3)	26,148	(7.8)	11,568	(7.0)
가족기능강화	63,797	(9.8)	19,384	(5.8)	23,740	(14.3)
학습 및 보호지원	24,689	(3.8)	2,433	(0.7)	1,205	(0.7)
사건처리지원	50,347	(7.7)	20,492	(6.1)	2,387	(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618	(0.1)	17,948	(5.3)	297	(0.2)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1,069	(0.2)	836	(0.2)	157	(0.1)
기타	21,373	(3.3)	3,844	(1.1)	2,573	(1.6)
계	651,619	(100.0)	335,818	(100.0)	165,586	(100.0)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29〉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2020년 홈케어 서비스	
참여대상 인원(명)	피해아동	2,659
	학대행위자	1,763
	가족구성원	826
	소계	5,248
서비스제공횟수(회)	피해아동	41,612
	학대행위자	25,469
	가족구성원	10,072
	소계	77,153

※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6. 재학대 사례

1) 재학대 사례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0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2,876명이다. 202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30,905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1.9%이다.

〈표 1-3-30〉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단위: 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18	2,543	2,195	10.3
2019	3,431	2,776	11.4
2020	3,671	2,876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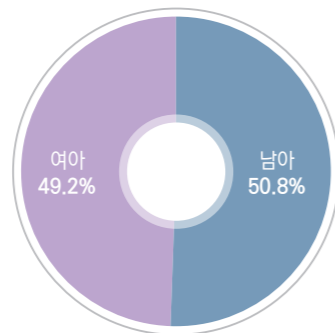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1,865건(50.8%), 여아 1,806건(49.2%)이었다.

〈표 1-3-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명, %)

성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아	1,865 (50.8)	1,439 (50.0)
여아	1,806 (49.2)	1,437 (50.0)
계	3,671 (100.0)	2,8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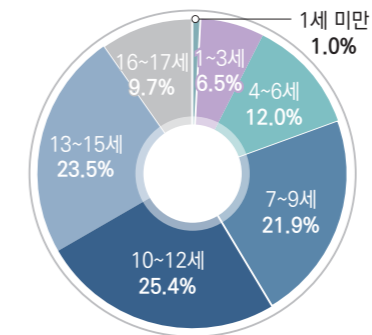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만 10세~12세가 932건(25.4%), 만 13세~15세 864건(23.5%), 만 7세~9세 804건(21.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37 (1.0)	24 (0.8)
1~3세	238 (6.5)	176 (6.1)
4~6세	441 (12.0)	325 (11.3)
7~9세	804 (21.9)	599 (20.8)
10~12세	932 (25.4)	728 (25.3)
13~15세	864 (23.5)	710 (24.7)
16~17세	355 (9.7)	314 (10.9)
계	3,671 (100.0)	2,876 (100.0)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2020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6년 이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20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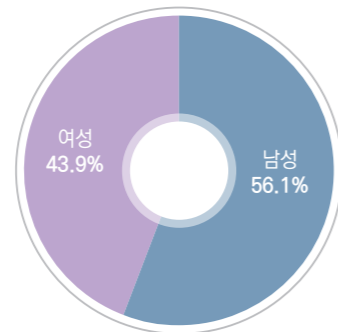
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2,061건(56.1%), 여성이 1,610건(43.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1-3-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명, %)

성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성	2,061	(56.1)	1,300	(55.2)
여성	1,610	(43.9)	1,053	(44.8)
계	3,671	(100.0)	2,353	(100.0)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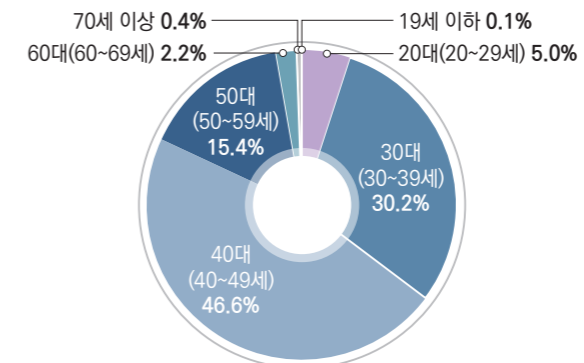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711건(4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107건(30.2%), 50대가 567건(15.4%), 20대가 184건(5.0%)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5	(0.1)	5	(0.2)
20대(20~29세)	184	(5.0)	132	(5.6)
30대(30~39세)	1,107	(30.2)	639	(27.2)
40대(40~49세)	1,711	(46.6)	1,127	(47.9)
50대(50~59세)	567	(15.4)	377	(16.0)
60대(60~69세)	82	(2.2)	61	(2.6)
70세 이상	15	(0.4)	12	(0.5)
계	3,671	(100.0)	2,353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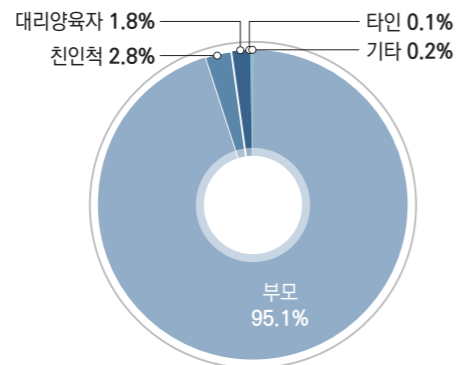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3,492건(95.1%)으로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는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03건(2.8%),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65건(1.8%)이었다.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878	(51.2)
	친모	1,480	(40.3)
	계부	91	(2.5)
	계모	32	(0.9)
	양부	7	(0.2)
	양모	4	(0.1)
	소계	3,492	(95.1)
친인척	친조부	7	(0.2)
	친조모	32	(0.9)
	외조부	7	(0.2)
	외조모	29	(0.8)
	친인척	16	(0.4)
	형제·자매	12	(0.3)
	소계	103	(2.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50	(1.4)
	초·중·고교 직원	1	(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2	(0.3)
	위탁모	2	(0.1)
	소계	65	(1.8)
타인	이웃	2	(0.0)
	낯선사람	1	(0.0)
	소계	3	(0.1)
기타	8	(0.2)	
계	3,671	(100.0)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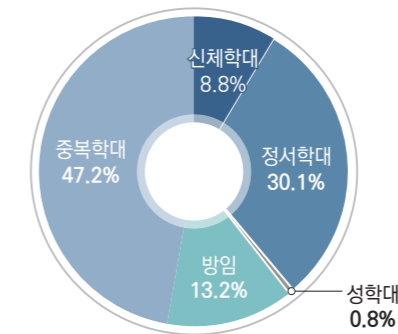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의 경우, 중복학대가 1,731건(47.2%), 정서학대 1,105건(30.1%), 방임 483건(13.2%), 신체학대 323건(8.8%), 성학대 29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323	(8.8)
정서학대	1,105	(30.1)
성학대	29	(0.8)
방임	483	(13.2)
중복학대	1,731	(47.2)
계	3,671	(100.0)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2020년에 발생한 재학대사례 3,671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하며, 이 표는 피해아동의 전체 상황을 수치화하였다. 단, 최초조치와 최종조치 사이에는 다양한 조치의 내용이 포함된다.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사례는 2,506건(68.3%)으로 가장 높았고, 최종적으로 분리조치 된 사례는 859건(23.4%),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는 164건(4.5%), 기타 138건(3.8%), 사망 4건(0.1%)으로 나타났다.

〈표 1-3-3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피해아동상황	상세조치		2020	
	최초	최종	건수	비율(%)
원가정보호	원가정보호 유지		2,506	(68.3)
	최초	최종		
가정복귀	원가정보호	가정복귀	9	(0.2)
	분리조치	가정복귀	147	(4.0)
	기타	가정복귀	8	(0.2)
	소계		164	(4.5)
분리조치	최초	최종		
	분리조치 유지		441	(12.0)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101	(2.8)
	분리조치	분리조치	311	(8.5)
	기타	분리조치	6	(0.2)
소계		859	(23.4)	
기타		138	(3.8)	
사망*		4	(0.1)	
계		3,671	(100.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재학대 사례에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사례는 1,650건으로 나타났다.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재학대 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671	1,650

* 피해아동의 사망 건수는 실제 사망아동 실인원 수와 차이가 있음.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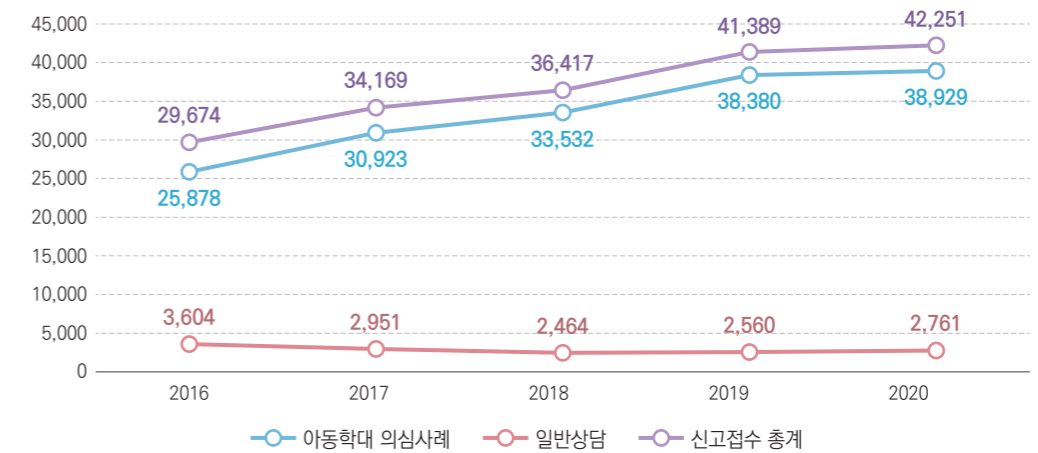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부터 87%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2.1% 증가하였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2.1%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2016년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0)		
2017년	30,923	(90.5)	292	(0.9)	2,951	(8.6)	3	(0.0)	34,169	(100.0)	15.1	국정과제 지정
2018년	33,532	(92.1)	420	(1.2)	2,464	(6.8)	1	(0.0)	36,417	(100.0)	6.6	
2019년	38,380	(92.7)	449	(1.1)	2,560	(6.2)	0	(0.0)	41,389	(100.0)	13.7	
2020년	38,929	(92.1)	557	(1.3)	2,761	(6.5)	4	(0.0)	42,251	(100.0)	2.1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8년 9,151건(27.3%), 2019년 8,836건(23.0%)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 10,973건(28.2%)로 다시 증가하였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직원이 가장 많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978건(15.4%), 2020년 3,805건(9.8%)으로 5개년 연속 신고의무자 중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본인이 신고한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533건(14.2%)로 나타났다.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중·고교 직원		3,978 (15.4)	5,168 (16.7)	6,406 (19.1)	5,901 (15.4)	3,805 (9.8)
의료인		216 (0.8)	-	-	-	-
의료인·의료기사		-	296 (1.0)	325 (1.0)	293 (0.8)	363 (0.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98 (1.9)	407 (1.3)	411 (1.2)	337 (0.9)	711 (1.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7 (0.1)	33 (0.1)	56 (0.2)	38 (0.1)	46 (0.1)
보육교직원		286 (1.1)	313 (1.0)	213 (0.6)	448 (1.2)	182 (0.5)
유치원교직원		114 (0.4)	115 (0.4)	115 (0.3)	140 (0.4)	140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4 (0.1)	9 (0.0)	18 (0.1)	32 (0.1)	42 (0.1)
소방구급대원		39 (0.2)	33 (0.1)	24 (0.1)	32 (0.1)	25 (0.1)
응급구조사		2 (0.0)	2 (0.0)	0 (0.0)	1 (0.0)	1 (0.0)
의료기사		2 (0.0)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12 (0.0)	9 (0.0)	8 (0.0)	4 (0.0)	3 (0.0)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2 (0.5)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	274 (0.9)	168 (0.5)	128 (0.3)	83 (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1 (0.0)	16 (0.1)	14 (0.0)	16 (0.0)	30 (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01 (1.2)	169 (0.5)	283 (0.8)	125 (0.3)	210 (0.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 (3.1)	819 (2.6)	-	-	632 (1.6)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8 (0.4)	27 (0.1)	72 (0.2)	200 (0.5)	984 (2.5)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종사자		695 (2.7)	-	-	-	2,394 (6.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12 (1.2)	271 (0.9)	211 (0.6)	266 (0.7)	347 (0.9)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1 (0.0)	20 (0.1)	25 (0.1)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26 (0.1)	51 (0.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4 (0.2)	48 (0.2)	31 (0.1)	67 (0.2)	91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5 (0.1)	33 (0.1)	52 (0.2)	82 (0.2)	61 (0.2)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1 (0.2)	38 (0.1)	48 (0.1)	63 (0.2)	65 (0.2)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23 (0.9)	357 (1.2)	276 (0.8)	286 (0.7)	280 (0.7)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75 (0.3)	43 (0.1)	121 (0.4)	105 (0.3)	87 (0.2)
아이돌보미		1 (0.0)	8 (0.0)	11 (0.0)	11 (0.0)	21 (0.1)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296 (1.1)	317 (1.0)	255 (0.8)	225 (0.6)	308 (0.8)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4 (0.0)	4 (0.0)	9 (0.0)	10 (0.0)
입양기관 종사자		0 (0.0)	1 (0.0)	4 (0.0)	1 (0.0)	1 (0.0)
소 계		8,288 (32.0)	8,830 (28.6)	9,151 (27.3)	8,836 (23.0)	10,973 (28.2)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 본인		2,322 (9.0)	3,883 (12.6)	4,512 (13.5)	4,752 (12.4)	5,533 (14.2)
부모		4,619 (17.8)	5,328 (17.2)	6,089 (18.2)	6,506 (17.0)	6,284 (16.1)
형제,자매		341 (1.3)	359 (1.2)	403 (1.2)	307 (0.8)	443 (1.1)
친인척		657 (2.5)	738 (2.4)	607 (1.8)	647 (1.7)	653 (1.7)
이웃·친구		1,858 (7.2)	1,963 (6.3)	1,859 (5.5)	1,718 (4.5)	1,945 (5.0)
경찰		1,426 (5.5)	645 (2.1)	406 (1.2)	291 (0.8)	216 (0.6)
종교인		40 (0.2)	24 (0.1)	18 (0.1)	24 (0.1)	28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4,088 (15.8)	323 (1.0)	933 (2.8)	959 (2.5)	367 (0.9)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종사자		619 (2.4)	6,881 (22.3)	7,756 (23.1)	12,389 (32.3)	10,254 (26.3)
의료사회복지사		-	79 (0.3)	66 (0.2)	25 (0.1)	39 (0.1)
낯선 사람		649 (2.5)	685 (2.2)	443 (1.3)	597 (1.6)	611 (1.6)
익명		244 (0.9)	271 (0.9)	228 (0.7)	275 (0.7)	401 (1.0)
기 타		727 (2.8)	914 (3.0)	1,027 (3.1)	986 (2.6)	1,127 (2.9)
법원		-	-	34 (0.1)	68 (0.2)	55 (0.1)
소 계		17,590 (68.0)	22,093 (71.4)	24,381 (72.7)	29,544 (77.0)	27,956 (71.8)
계		25,878 (100.0)	30,923 (100.0)	33,532 (100.0)	38,380 (100.0)	38,929 (100.0)

비
신
고
의
무
자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가 통합되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2019. 7. 16.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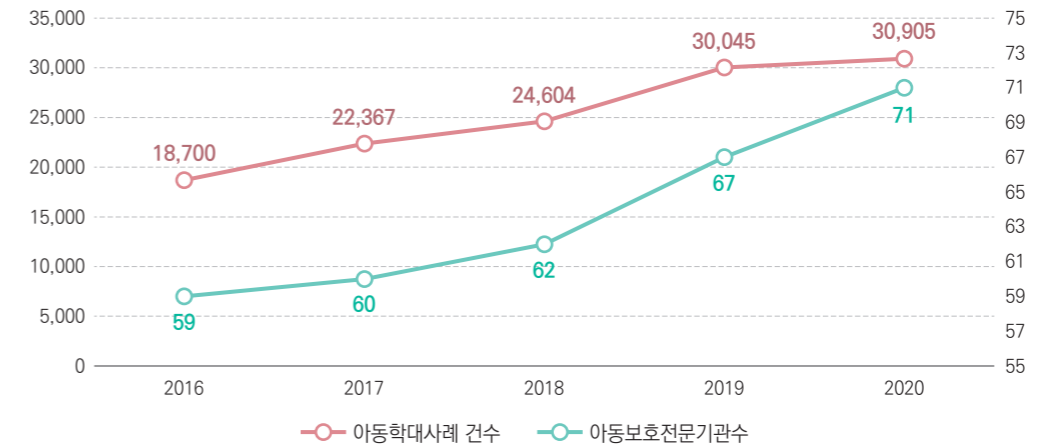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20년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기관수의 경우 2019년 67개소에서 2020년 71개소로 증가했다.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18,700	22,367	24,604
	증가율	59.6	19.6	10.0	22.1	2.9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9	60	62	67	71
	증가 기관수	4	1	2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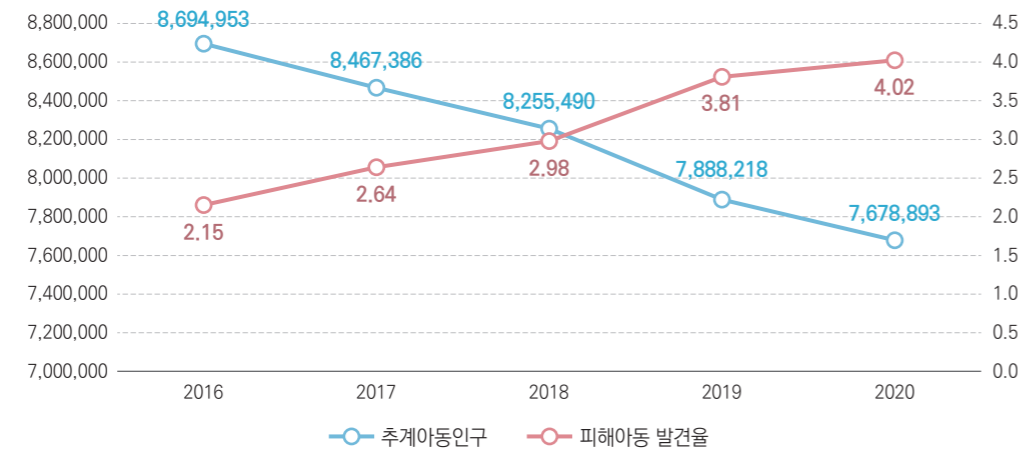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반면 아동학대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아동 발견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8,694,953	8,467,386	8,255,490	7,888,218	7,678,893
아동학대사례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피해아동 발견율	2.15	2.64	2.98	3.81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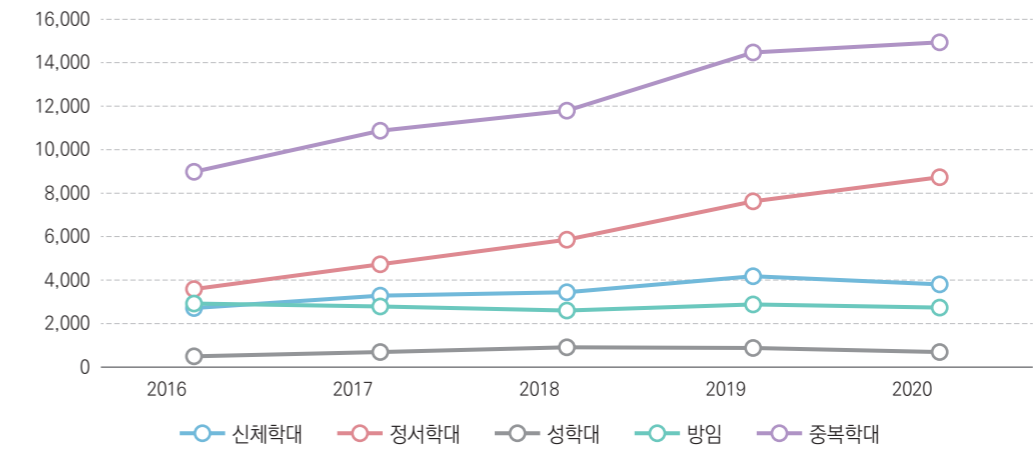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개년 연속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6년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18,700	(100.0)
2017년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2,367	(100.0)
2018년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0)
2019년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2020년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14,934	(48.3)	30,905	(100.0)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016년은 통계청 추계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2020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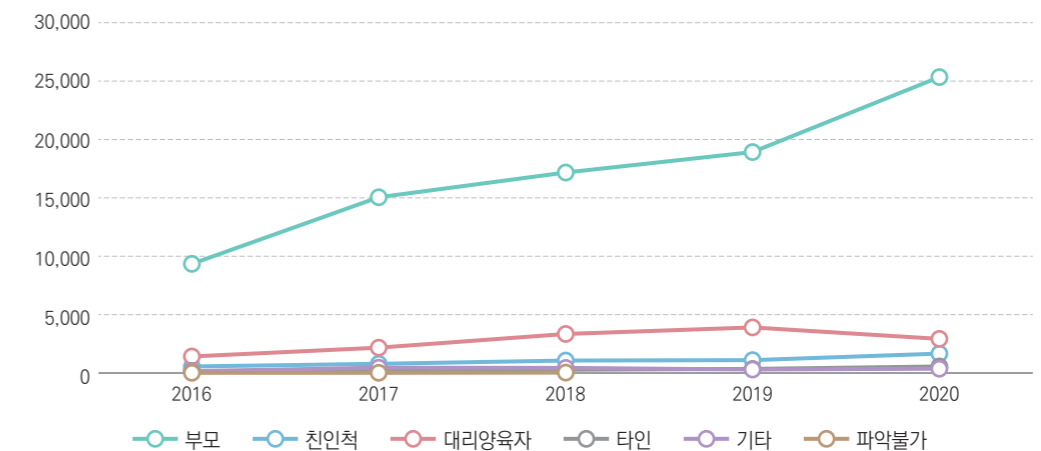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5% 이상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6년 2,173건(11.6%)에서 2019년 4,986건(16.6%)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2,930건(9.5%)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중 가장 높은 것은 초·중·고교직원 882건(2.9%)이었다.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 모	친부	8,295 (44.4)	9,562 (42.8)	10,747 (43.7)	12,371 (41.2)	13,471 (43.6)	
	친모	5,923 (31.7)	6,824 (30.5)	7,338 (29.8)	9,342 (31.1)	10,945 (35.4)	
	계부	394 (2.1)	401 (1.8)	480 (2.0)	557 (1.9)	578 (1.9)	
	계모	362 (1.9)	341 (1.5)	297 (1.2)	336 (1.1)	312 (1.0)	
	양부	37 (0.2)	28 (0.1)	36 (0.1)	58 (0.2)	40 (0.1)	
	양모	37 (0.2)	21 (0.1)	22 (0.1)	36 (0.1)	34 (0.1)	
	소계	15,048 (80.5)	17,177 (76.8)	18,920 (76.9)	22,700 (75.6)	25,380 (82.1)	
	친 인 척	친조부	111 (0.6)	128 (0.6)	147 (0.6)	194 (0.6)	231 (0.7)
		친조모	177 (0.9)	237 (1.1)	229 (0.9)	304 (1.0)	374 (1.2)
		외조부	39 (0.2)	61 (0.3)	74 (0.3)	76 (0.3)	131 (0.4)
외조모		95 (0.5)	127 (0.6)	118 (0.5)	143 (0.5)	230 (0.7)	
친인척		266 (1.4)	328 (1.5)	352 (1.4)	390 (1.3)	429 (1.4)	
형제, 자매		107 (0.6)	186 (0.8)	194 (0.8)	225 (0.7)	266 (0.9)	
소계		795 (4.3)	1,067 (4.8)	1,114 (4.5)	1,332 (4.4)	1,661 (5.4)	
대 리 양 육 자		부·모의 동거인	311 (1.7)	247 (1.1)	270 (1.1)	363 (1.2)	444 (1.4)
	유치원교직원	240 (1.3)	281 (1.3)	189 (0.8)	155 (0.5)	118 (0.4)	
	초·중·고교 직원	576 (3.1)	1,345 (6.0)	2,060 (8.4)	2,154 (7.2)	882 (2.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67 (0.9)	217 (1.0)	176 (0.7)	320 (1.1)	208 (0.7)	
	소계	1,294 (6.8)	2,170 (9.7)	2,695 (10.4)	4,092 (12.9)	2,930 (9.5)	

관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 리 양 육 자	보육교직원	587 (3.1)	840 (3.8)	818 (3.3)	1,384 (4.6)	634 (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3 (1.4)	285 (1.3)	313 (1.3)	408 (1.4)	556 (1.8)	
	기타시설 종사자	28 (0.1)	60 (0.3)	27 (0.1)	63 (0.2)	12 (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 (0.0)	32 (0.1)	33 (0.1)	87 (0.3)	14 (0.0)	
	위탁부	0 (0.0)	4 (0.0)	7 (0.0)	3 (0.0)	4 (0.0)	
	위탁모	5 (0.0)	17 (0.1)	2 (0.0)	8 (0.0)	16 (0.1)	
	아이돌보미	4 (0.0)	15 (0.1)	11 (0.0)	41 (0.1)	42 (0.1)	
	소계	2,173 (11.6)	3,343 (14.9)	3,906 (15.9)	4,986 (16.6)	2,930 (9.5)	
	타 인	이웃	91 (0.5)	86 (0.4)	146 (0.6)	224 (0.7)	211 (0.7)
		낯선 사람	110 (0.6)	208 (0.9)	214 (0.9)	439 (1.5)	354 (1.1)
소계		201 (1.1)	294 (1.3)	360 (1.5)	663 (2.2)	565 (1.8)	
기타	454 (2.4)	441 (2.0)	304 (1.2)	364 (1.2)	369 (1.2)		
파악불가	29 (0.2)	45 (0.2)	-	-	-		
계	18,700 (100.0)	22,367 (100.0)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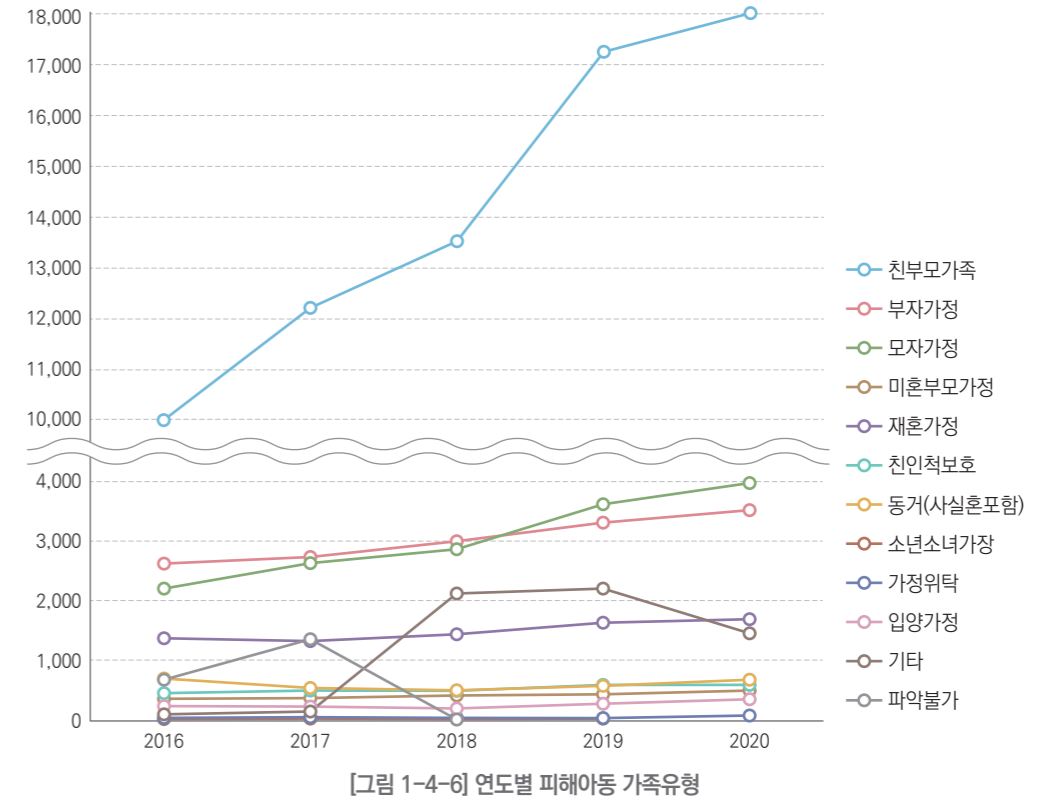
기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친부모가정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059건(58.4%)까지 증가했다. 친부모 가정 외 형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으나, 실질적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가족유형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친부모가정		9,931 (53.1)	12,489 (55.8)	13,546 (55.1)	17,324 (57.7)	18,059 (58.4)
부자가정		2,623 (14.0)	2,732 (12.2)	2,997 (12.2)	3,311 (11.0)	3,521 (11.4)
모자가정		2,203 (11.8)	2,632 (11.8)	2,865 (11.6)	3,621 (12.1)	3,977 (12.9)
미혼부·모 가정		347 (1.9)	361 (1.6)	404 (1.6)	424 (1.4)	487 (1.6)
재혼가정		1,366 (7.3)	1,318 (5.9)	1,435 (5.8)	1,627 (5.4)	1,686 (5.5)
친인척보호		444 (2.4)	487 (2.2)	483 (2.0)	583 (1.9)	582 (1.9)
동거 (사실혼포함)		688 (3.7)	532 (2.4)	490 (2.0)	565 (1.9)	668 (2.2)
소년소녀 가정		10 (0.1)	16 (0.1)	8 (0.0)	15 (0.0)	-
가정위탁		28 (0.1)	38 (0.2)	27 (0.1)	23 (0.1)	69 (0.2)
입양가정		79 (0.4)	56 (0.3)	44 (0.2)	84 (0.3)	66 (0.2)
시설보호		227 (1.2)	217 (1.0)	187 (0.8)	265 (0.9)	340 (1.1)
기 타		86 (0.5)	137 (0.6)	2,118 (8.6)	2,203 (7.3)	1,450 (4.7)
파악불가		668 (3.6)	1,352 (6.0)	-	-	-
계		18,700 (100.0)	22,367 (100.0)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2020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약 0.19%를 차지하였다. 사망사례분석을 위해 신고접수된 사례 중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대로 사망했다고 판단 혹은 추정되는 사례와 더불어, 동일 기간 동안 경찰에 발생한 '아동학대치사죄', '아동살인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전국 각 경찰청에서 취합하였다. 그 결과, 총 37명의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인지된 6개 사례를 합쳐 총 43명의 사망아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사망아동 인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명수 중 사망아동 명수 비율
2016	36	0.25
2017	38	0.21
2018	28	0.14
2019	42	0.19
2020	43	0.19



아동학대 사망사례 추출기준

-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수된 아동과 경찰로부터 집계한 사망 아동,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사망 아동 중 사망일이 2020년(1.1~12.31)인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개입 사례, 개입이력 없이 사망신고를 통해 최초 인지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음.
- 타 기관과 집계기준(죄명, 행위자 등)이 다른 경우 통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사망 아동 부검사례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자료)은 아동학대로 의심한 경우도(영아급사중후군 등) 사망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다름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가 31명(72.1%), 여아가 12명(27.9%)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성별	남아	31 (72.1)
	여아	12 (27.9)
총계	43	(100.0)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세 미만이 20명(46.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만 1세(16.3%), 만 8세(11.6%)가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연령(만)	1세 미만	20 (46.5)
	1세	7 (16.3)
	3세	2 (4.7)
	5세	3 (7.0)
	6세	1 (2.3)
	8세	5 (11.6)
	9세	1 (2.3)
	13세	3 (7.0)
	15세	1 (2.3)
	총계	43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사망아동의 교육기관 재원·재학과 관련해서는 다니지 않은 아동이 21명(4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례 중에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각 4명(각 9.3%), 중학교 3명(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교육기관	다니지 않음	21 (48.8)
	어린이집	4 (9.3)
	유치원	1 (2.3)
	초등학교	4 (9.3)
	중학교	3 (7.0)
	대안학교	1 (2.3)
	기타(자료 없음 등)*	9 (20.9)
	총계	43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19명(4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혼부·모가정 8명(18.6%), 모자가정이 6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19 (44.2)
	부자가정	1 (2.3)
	모자가정	6 (14.0)
	미혼부·모가정	8 (18.6)
	동거(사실혼 포함)	2 (4.7)
	입양가정	1 (2.3)
	재혼가정	4 (9.3)
	친인척보호	1 (2.3)
	기타(자료 없음 등)*	1 (2.3)
	총계	43 (100.0)

- 친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 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

사망사례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의 경우 사건이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60.5%). 이를 제외하고는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이 각 4명(각 9.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	소득 없음	1 (2.3)
	50만 원 미만	3 (7.0)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 (4.7)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 (7.0)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4 (9.3)
	300만 원 이상	4 (9.3)
	기타(자료 없음 등)**	26 (60.5)
총계	43	(100.0)

*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의 공적지원은 가구소득에서 제외됨.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사망아동의 내국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망아동 중 3명(7.0%)만 외국인이었으며, 40명(93.0%)은 내국인이었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아동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은 2명(4.7%), 일반(비다문화가족)아동은 35명(81.4%)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적과 귀화, 다문화가정 여부 등은 명시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 귀화했음, 다문화가족임을 나타내는 직·간접적 정보가 없는 한 최대한 내국인, 귀화하지 아니함, 일반(비다문화가족)으로 추정하였다.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내국인 여부	내국인	40 (93.0)
	외국인	3 (7.0)
계	43	(100.0)
피해아동 귀화 여부	해당 없음	41 (95.3)
	기타(자료 없음 등)*	2 (4.7)
계	43	(100.0)
피해아동 다문화가족 여부	일반	35 (81.4)
	다문화가족	2 (4.7)
	기타(자료 없음 등)	6 (14.0)
계	43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3.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사례마다 학대행위자의 수가 다르며, 각 사례마다 다수의 학대행위자의 학대 개입의 정도가 달랐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학대행위자를 '주가해자'와 '부가해자'로 구분하였으며, 주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이들을 공동가해자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계는 주가해자 51명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 학대행위자는 19명(37.3%), 여성 학대행위자는 32명(62.7%)으로, 여성 학대행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성별	남성	19 (37.3)
	여성	32 (62.7)
총계	51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30대(43.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41.2%), 40대(11.8%), 50대 및 60대(각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연령(만)	20대	21 (41.2)
	30대	22 (43.1)
	40대	6 (11.8)
	50대	1 (2.0)
	60대	1 (2.0)
계	51	(100.0)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학대행위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파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등졸업이 6명(1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초등졸업	1 (2.0)
	중등졸업	2 (3.9)
	고등중퇴	2 (3.9)
	고등졸업	6 (11.8)
	대학재학	1 (2.0)
	대학졸업	3 (5.9)
	대학원졸업	1 (2.0)
	기타(자료 없음 등)*	35 (68.6)
총계	51	(100.0)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직업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학대행위자 정보 중에서는 무직이 22명(4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비율(15.7%)이 높았다.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2.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3.9)
	단순노무종사자	2 (3.9)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8 (15.7)
	자영업	1 (2.0)
	전문직	3 (5.9)
	무직	22 (43.1)
	기타(자료 없음 등)**	12 (23.5)
총계	51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의 경우 재판 중 등의 이유로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32명(62.7%)으로 가장 많았다. 파악이 가능했던 소득 정보를 살펴본 결과, 3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1.8%), 19명의 소득 자료만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소득 없음	1 (2.0)
	50만 원 미만	4 (7.8)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 (3.9)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 (3.9)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4 (7.8)
	300만 원 이상	6 (11.8)
	기타(자료 없음 등)**	32 (62.7)
총계	51	(100.0)

*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의 공적지원은 가구소득에서 제외됨.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3명(5.9%)의 학대행위자가 외국인이었으며, 48명(94.1%)은 내국인이었다. 귀화한 학대행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1명(2.0%)에 불과하였다. 학대행위자도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직·간접적 정보가 없을 경우 최대한 내국인, 귀화하지 아니함, 비다문화가족으로 추정하였다.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내국인 여부	내국인	48 (94.1)
	외국인	3 (5.9)
계	51	(100.0)
학대행위자 귀화 여부	해당 없음	45 (88.2)
	기타(자료 없음 등)*	6 (11.8)
계	51	(100.0)
학대행위자 다문화가족 여부	일반	43 (84.3)
	다문화가족	1 (2.0)
	기타(자료 없음 등)	7 (13.7)
계	51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망사건 발생 당시 피해아동과 동거 중이었던 학대행위자(86.3%)가 비동거 학대행위자(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동거 여부	동거	44 (86.3)
	비동거	4 (7.8)
	기타(자료 없음 등)*	3 (5.9)
총계	51	(100.0)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모인 경우가 26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부 13명(25.5%),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은 86.3%로 나타났다.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단위: 명, %)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부모	친부	13 (25.5)
	친모	26 (51.0)
	양모	1 (2.0)
	계부	2 (3.9)
	계모	2 (3.9)
	소계	44 (86.3)
친인척	외조모	1 (2.0)
	외숙부	1 (2.0)
	외숙모	1 (2.0)
	소계	3 (5.9)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 (2.0)
	아이돌보미	2 (3.9)
	소계	3 (5.9)
기타	1 (2.0)	
계	51	(100.0)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움.

5. 사망사례 발생 현황

1)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지역별 사망사례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아동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5.6%),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각 16.3%)였다.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시도명	서울특별시	7 (16.3)
	부산광역시	1 (2.3)
	인천광역시	3 (7.0)
	광주광역시	1 (2.3)
	대전광역시	3 (7.0)
	울산광역시	1 (2.3)
	경기도	11 (25.6)
	강원도	2 (4.7)
	충청남도	2 (4.7)
	전라남도	2 (4.7)
	경상북도	3 (7.0)
	경상남도	7 (16.3)
	총계	43

2)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사망사례의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차지한 비율은 44.2%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는 55.8%로 나타났다.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19 (44.2)
	비신고의무자	24 (55.8)
총계	43	(100.0)

* 실제 사망 발생지와 사례관할지역은 다를 수 있음.

6.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가 17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임(31.4%), 신체·정서(7.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조사를 진행한 후 사례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방임	16	(31.4)
방임·신체	3	(5.9)
신체	17	(33.3)
신체·정서	4	(7.8)
신체·정서·방임	3	(5.9)
정서·방임	1	(2.0)
기타(자료 없음 등)**	7	(13.7)
총계	51	(100.0)

* 추가해자 51명 기준

** 피의자 사망, 재판 중인 사유 등으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

7.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사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인 사망사례는 2020년에 발생한 사건들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선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35.3%, 수사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9%, 확정사건이나 판결문 열람을 하지 못한 사건 등의 경우가 13.7%였다. 파악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제외)을 선고받은 학대행위자의 비율은 23.5%로 확인되었으며, 10년을 초과하는 양형을 선고받은 학대행위자는 9.8%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를 받은 학대행위자는 13.7%로 나타났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는 3.9%였다.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집행유예	7	(13.7)	
양형	1년 초과-5년 이하	4	(7.8)
	5년 초과-10년 이하	3	(5.9)
	10년 초과-15년 이하	3	(5.9)
	15년 초과(25년)	2	(3.9)
재판 중	18	(35.3)	
불기소**	2	(3.9)	
내사종결***	3	(5.9)	
수사중	2	(3.9)	
기타****	7	(13.7)	
총계	51	(100.0)	

* 2021. 8. 10. 확정된 재판 기준

** 피의자 사망으로 검찰 불기소(공소권 없음) 종결된 사건 포함

***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포함

**** 확정사건이나 판결문 열람을 하지 못한 사건 등 포함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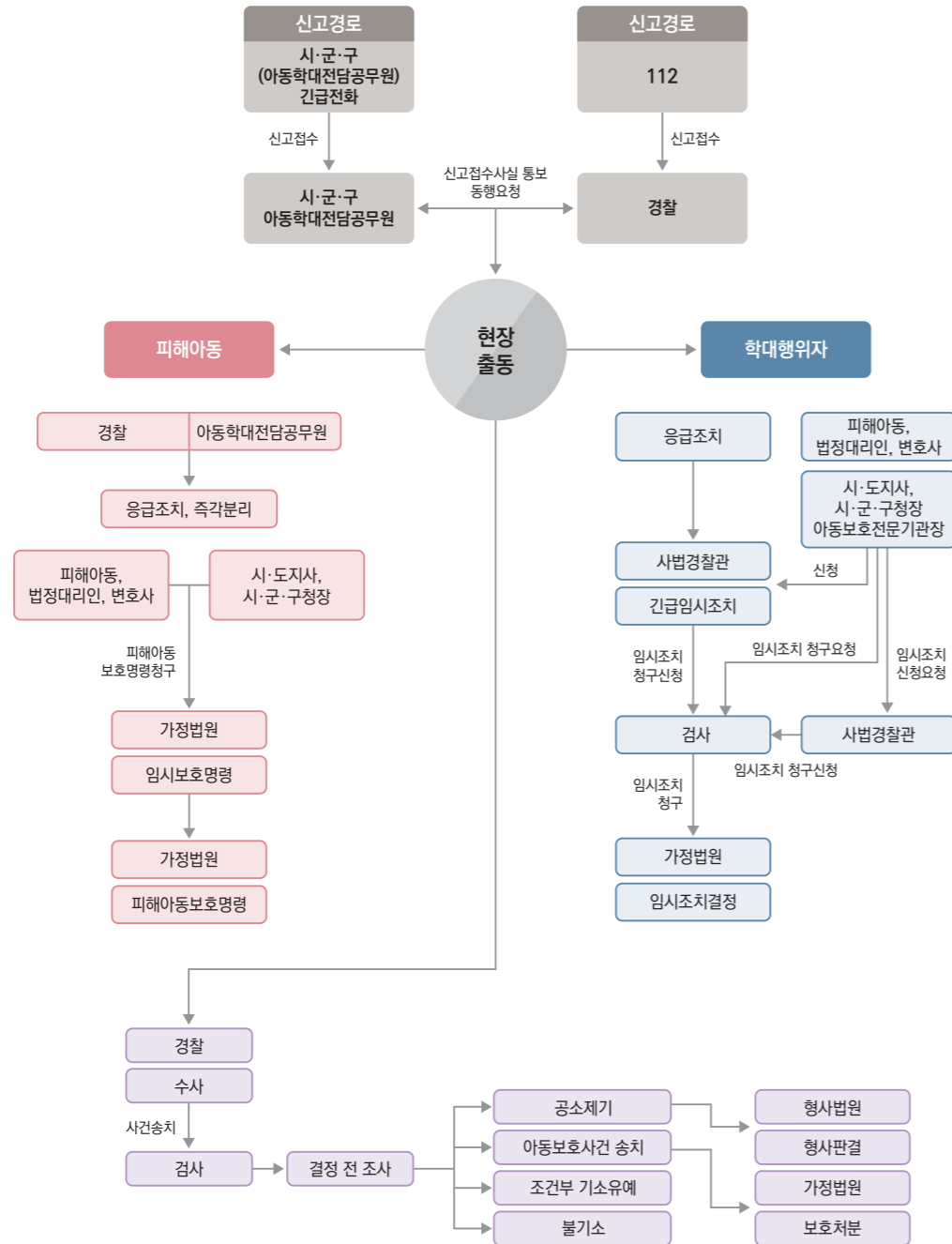


부록

부록	86
통계 정정사항	92

부록

1. 업무흐름도



2. 용어 설명

일반사항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혹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2019.7.16.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조사공공화 시행(2020.10.1.)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는 지자체에서 수행함
신고접수	
신고접수(사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해당 사례들은 신고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small>*2020.10.1. 기준으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구분하지 않음</small>
일반상담(사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동일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되는 사례

신고접수	
재신고(사례)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해 동일한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가 발생한 사례를 말함
재학대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등 25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조기지원사례는 일반사례로 분류됨
아동학대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조기지원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조기지원사례는 일반사례로 분류됨
일반사례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친부모가족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부자·모자 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모 가정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 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친인척보호가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계모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양모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
임시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조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 분리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구함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원가정보호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분리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
가정 복귀	아동학대로 분리보호 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고소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조치결과관리	
사건처리	고소, 고발, 인지수사, 특례법 임시조치 등 수사진행 및 수사 미진행 모두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법절차를 의미함
보호처분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 집단상담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 서비스,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의료지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심리치료지원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한 서비스
학습 및 보호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사건처리지원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행위자수탁 프로그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피해아동수탁 프로그램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례종결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1.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및 주요통계

1)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시도명	강원도	1	(2.4)
	경기도	8	(19.0)
	경상남도	8	(19.0)
	경상북도	2	(4.8)
	광주광역시	1	(2.4)
	대구광역시	2	(4.8)
	대전광역시	2	(4.8)
	부산광역시	1	(2.4)
	서울특별시	6	(14.3)
	세종특별자치시	1	(2.4)
	울산광역시	1	(2.4)
	인천광역시	4	(9.5)
	전라남도	2	(4.8)
	충청남도	3	(7.1)
	총계	42	(100.0)

※ 실제 사망 발생지와 사례관할지역은 다를 수 있음.